

의안번호	제302호
의결 연월일	2012년 4월 일 (제 308 회)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4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4월 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
- 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고대상의 범위를 규정
- 신고포상금을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하여 도민 소방안전망 확보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신고대상을 나열식으로 명문화 함(안 제3조)
 - 다중이용업소, 대규모점포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복합건축물 등
- 포상금을 현금외에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(안 제9조)
- 1인 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"50만원"에서 "30만원"으로 조정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”를 “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·훼손하는 행위
2.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
3.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전문점,백화점,쇼핑센터,복합쇼핑몰)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·훼손하는 행위
4.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전문점,백화점,쇼핑센터,복합쇼핑몰)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
5. 위 대상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(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)을 폐쇄·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

제9조제2항 중 “비상구 등”을 “비상구 폐쇄 등”으로 하고, “5만원”을 “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(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5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·훼손하는 행위 2.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.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)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·훼손하는 행위 4. 대규모점포(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)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. 위 대상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(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)을 폐쇄·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포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본인과 가족(직계 존비속)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<u>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u>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9조(포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(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)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본인과 가족(직계 존비속)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<u>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u>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근거 및 법령

【조례 개정 근거】

-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안(통보)
【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- 533(2012.1.31)】

【관련법령】

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10조 (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)

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·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·내부 마감재료 등(이하 "방화시설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2.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3.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4. 그 밖에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53조 (과태료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·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

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 (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)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·내부 마감재료 등(이하 "방화시설"이라 한다)을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5조 (과태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1.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■ 건축법

제49조 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, 계단, 출입구,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(消火栓), 저수조(貯水槽),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·위생 및 방화(防火)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, 방화구획(防火區劃), 화장실의 구조, 계단·출입구, 거실의 반자 높이, 거실의 채광·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 (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)

- ①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(耐火)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

제51조 (방화지구 안의 건축물)

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, 광고탑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(不燃)재료로 하여야 한다.
-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·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.

제52조 (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,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.

제53조 (지하층)

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.

■ 건축법 시행령

제46조(방화구획의 설치)

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·벽 및 제4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(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구획(이하 "방화구획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「원자력안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6조(건축물의 내화구조)

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)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
2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·식물원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·운동장, 위락시설(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)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·전신전화국·촬영소,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3.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4.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(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)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5.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. 다만, 단독주택(다중주택 및

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발전시설(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), 교도소·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(화장장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.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.

제57조(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)

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,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. 다만,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
제58조(방화지구의 건축물)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
2.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

제61조(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)

법 제5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(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
1. 문화 및 집회시설(예식장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(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
2.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·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·독서실·고시원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,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·노인복지시설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주요

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3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), 자동차 관련 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·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4.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. 다만,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,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.
 - 가.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
 - 나.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
 - 다.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[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
5.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6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·당구장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등학교만 해당한다), 수련시설, 숙박시설 중 여관·여인숙,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(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